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616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21.

발의자 : 조승래 · 안민석 · 전재수
박홍근 · 유은혜 · 김민기
오영훈 · 김병욱 · 김병기
노웅래 · 송기현 · 이철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률은 제9조(전사자유해의 조사·발굴)제3항에 있어 ‘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3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(包藏)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, 제43조제5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·발굴할 수 있다.’라고 되어 있음.

그런데 2010년 2월 4일 「문화재보호법」이 전부개정되고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·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전단 중 “제43조제2항”을 “제48조제2항”으로, “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(包藏)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등”을 “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”으로, “같은 법 제34조, 제43조”를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, 제48조”로, “제55조”를 “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④ ~ ⑦ (생략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